2021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제안요청서(RFP)

- 목 차 -

□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

○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(연구자협력형) ····· 2

○ 한-스위스 국제협력 ····· 4

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(연구자 협력형)

제안요청서명 (세부사업명)	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- 연구자 협력형 (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)			보안과제 여부 (보안등급)	일반
공모유형	품목지정형			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	X
적용대상가점	해당사항 없음	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	X	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	X
과 제 명	※ '해당연구'와 관련된 최종목표(과제종료시),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				

지원규모 및 기간

지원분야	지원기간[1]	연구비[2]	협약형태	선정 예정 과제수
박사과정	최대 12개월 이내 ('21년 6개월+'22년 6개월)	84백만원 이내 (1차년도 42백만원 이내)	다년도	3개
박사 후 연구원		104백만원 이내 (1차년도 52백만원 이내)		
박사과정	6개월 이내 ('21년 6개월)	42백만원 이내	단년도	1개
박사 후 연구원		52백만원 이내		

[1] 연수기간은 6～12개월
[2] 과제당 연구비는 지원인원 학위에 따라 산출
※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 지원목적

○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선도 기관에서의 해외연수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

▶ 지원분야 및 내용(예시)

지원분야	성과목표	지원내용(예시)
연구자협력형	**박사과정** SCI(E)급 논문 또는 Top conference 발표	▪ 보건의료분야 해외 대학, 연구소, 병원 기업 등 해외 선도기관 연수
	박사 후 연구원 SCI(E)급 논문* 또는 특허 출원 * 단, 논문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	

※ 제시된 연구목표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

▶ 지원대상

○ 주관기관 : 국내 학・연・병 (상세내용 : 조건 등은 공모안내서 '신청요건' 참조)

○ 연구책임자(연수자) :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서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구원*
*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의 Ph.D. 또는 7년 이내의 Ph.D.(M.D., D.D.S.)이며, 비정규직이어야 함 (단, 박사후 과정 해외연수 기수행자는 제외함)
-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전문연구요원(군 대체복무자)은 지원할 수 없음

▶ 특기사항

구분	내용
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할	○ 해외 연수기관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 ○ 연수자 발굴 및 선발(기관별 연수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출국을 권장) ○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・운영 - 연수자 확정시 국내외 각각 1명의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</td><td>- 연수자별 모니터링・멘토링 실시 등
- 연수자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 후 연수자에 대한 종합정보 DB 구축・운영 등
< 멘토 역할 >
▪ 연수자(멘티)가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, 타 연구자와의 연구교류 확대 기회 제공 및 지원 등
▪ 연수자 관리의 책임은 국내 멘토 및 연수생 소속기관에 있음</td></tr>
<tr><td>연수자
주의사항</td><td>○ 1인당 연수기간은 6～12개월이며, 연수기간 분할은 12개월 연수자에 한하여 1회 가능 (단, 연수개시 후 2년 이내에 연수를 완료하여야 함)
○ 선정 후 해당과제에 대한 참여율은 100%이어야 함
○ 연수기간 중 연간(12개월 기준) 15일을 초과하는 국내 체류일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함 (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 8일)
* 국내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
○ 연수자는 연수 종료 후 반드시 귀국해야하며,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내 복귀의무 미준수시 해당 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예정
○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○ 본 연구 최종평가는 과제지원 종료 이후 1년간의 성과등록기간을 거쳐 실시</td></tr>
<tr><td>연구비
편성 및
집행 기준</td><td>○ 연구비 산정기준
- 1인당 인건비, 체재비, 준비금, 국내·외 연구비 등을 연구비 편성 및 집행액 기준에 따라 산정
* 연간 박사과정 84백만원, 박사후연구원 104백만원 이내 지원
<table>
<tr><th rowspan="3">과제
지원액</th><th colspan="5">연구비 편성 및 집행 기준</th></tr>
<tr><th colspan="4">직접비</th><th rowspan="2">간접비**</th></tr>
<tr><th>연수자 인건비</th><th>연수자 체재비</th><th>연수자
준비금</th><th>국내・외
연구비* 등</th></tr>
<tr><td>연수자
구성에
따라 다름</td><td>박사과정: 250만원/월
박사후: 주관기관 기준</td><td>지역에 따라 다름
(최대 24백만원
이내/연)</td><td>실비</td><td>(박사생)
20백만원 이내/연
(박사후)
40백만원 이내/연</td><td>직접비
3% 이내</td></tr>
</table>
* 직접비내 세목별(인건비, 학생인건비, 연구시설・장비비, 연구활동비, 연구재료비, 연구수당, 위탁연구개발비)로 자율편성 후 집행
** 간접비 계산 시, 박사과정생의 국내·외 연구비(20백만원)는 직접비에서 제외</td></tr>
</table>

▶ 선정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평가	지원의 필요성(20)	○ 국제공동 연구의 필요성(20)
	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적절성(35)	○ 연구내용의 우수성(20) ○ 연구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5)
	연수자의 역량 및 멘토의 의지(35)	○ 연수자의 역량(20) ○ 멘토의 역량 및 지원의지(15)
	기대성과(10)	○ 기대성과의 우수성(1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2 한-스위스 국제협력

제안요청서명 (세부사업명)	한-스위스 국제협력 (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)			보안과제 여부 (보안등급)	일반
공모유형	품목지정형			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	X
적용대상 가점	해당사항 없음	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	X	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	X
과 제 명	※ *'해당연구'와 관련된 최종목표(과제종료 시),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*				

지원규모 및 기간	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구비	협약형태	선정 예정 과제수
	한-스위스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활동 지원	12개월 이내	20백만원 이내	단년도	6개 이내

▶ 지원목적

○ 국내 연구자의 스위스 연구자와의 연구자 교류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활동 지원을 통해 향후 한-스위스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자 네트워크 저변 확대

○ 연구자 간 네크워크 구축 및 상호보완적 유망기술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한-스위스 공동연구협력 기반 마련

▶ 지원분야 및 내용(예시)

지원분야	성과목표	지원내용(예시)
한-스위스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활동 지원	▪ 한-스위스 연구자 간 협력활동 보고서 ▪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세부연구 분야 관련 한-스위스 공동연구 추진 계획(안)	▪ 공동수요 발굴 및 협력 논의를 위한 공동세미나, 워크샵 등 개최 ▪ 스위스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단기 연수 등 인력교류 활동 ▪ 기타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활동

※ 제시된 연구목표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

▶ 지원대상

○ 주관연구기관은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
○ 연구자는 대학,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연구기관,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보유) 등에 소속된 연구자여야 함

*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신고 연월일은 과제 접수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총 연구기간을 포함하여야 함

○ 본 프로그램을 기 수행한 연구자의 경우, 수행된 연구내용을 확대·후속 기획하거나 기존 협력연구자가 아닌 다른 스위스측 연구자와 협력하는 내용으로 신청 가능 (동일내용으로는 지원 불가)

○ 본 사업은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

○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특기사항

○ 과제 구성
- 단독과제로 구성 (위탁과제 구성 불가)

○ 연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
- 국제협력 또는 연구 교류를 희망하는 세부분야 명시
- 스위스 연구자와의 협력활동 계획을 반드시 포함

○ 본 프로그램은 한-스위스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인건비는 지원연구비로 집행 불가

○ 성과평가
- 한-스위스 연구자 간 협력활동 보고서 제출
-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세부연구분야 관련 한-스위스 공동연구 추진계획(안) 제출
  * 스위스측 협력 연구자/기업/기관 명시 필수

○ 연구책임자는 '한-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심포지엄'에 세션 연자로 참여 필수
  * 연구현황·성과 등 발표

○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추가 연구성과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일반적인 사항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과제평가 표준지침」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평가	1. 협력활동의 가치(50)	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 ○ 활동내용의 우수성 및 적절성(20) ○ 세부 활동 구성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(10) ○ 해당 보건의료분야에의 기여도(10)
	2. 협력활동의 기대 효과(30)	○ 교류·협력으로 창출되는 유익(15) ○ 향후 공동연구 발굴 및 가시적 성과로의 연계성(15)
	3. 협력활동의 지속 가능성(20)	○ 구축된 양국 간 협력관계의 지속가능성(10) ○ 협력활동 및 연구 결과의 파급효과(1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